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2191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2191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소280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 선고 2020. 11. 3.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소280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8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25.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D호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5. 5. 경위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E에게 위 돈을 반환해주시기 바란다는 피고 명의의 양도통고서를 수령하게 되자 피고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양도통고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7,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입금받아 수령한 사실, 그러나 이후 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E에게 22,963,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22,963,449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 F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양도할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 설사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E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E가 2018. 6. 1.경 피고의 동산경매를 통하여 약 2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이효두

판사박이규